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經理院可考件』의 편철 양상과 내장원의 역둔토문서 분류체계

박 성 준 *

1. 머리말
2. 『經理院可考件』의 편철 양상
3. 『經理院可考件』의 성격과 내장원의 역둔토문서 분류체계
4. 맺음말

초록: 내장원은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역둔토성책을 査檢·定賭·徵收의 역둔토 운영체계에 조응해서 분류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내장원이 폐지되고 역둔토문서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査檢·定賭·徵收의 운영체계에 조응한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가 붕괴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분류체계가 붕괴된 상태의 역둔토성책을 정리하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개별 성책들을 한 질로 묶어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 질로 분류한 이들 성책을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을 갖지 않는 일부 성책들을 따로 모아 합철본의 형태로 편철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된 대표적인 합철본으로는 『經理院驛屯土成册』이 있다. 『經理院驛屯土成册』에는 전혀 연계성이 없는 다양한 연도, 지역, 성격의 성책 수십 건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편철되어 있고, 『經理院可考件』도 편철방식이 이와 비슷해 지금까지 합철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經理院可考件』은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합철본이 아니었고, 편철방식도 『經理院驛屯土成册』과 차이가 있었다.

내장원은 査檢·定賭·徵收 체계에 기초하여 역둔토를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하거나 이후 경과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성책을 연도를 기준으로 可考册에 따로 모아 편철·분류하였다. 『經理院可考件』은 재검토 대상인 성책을 내장원이 可考라는 독자적인 범주로 따로 분류해서 편철했던 문서철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즉 이 자료는 합철본처럼 분

*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시간강사.

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련 문서철을 함께 모아 연도순으로 재분류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은 査檢·定賭·徵收의 운영체계에 기초하여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역둔토문서를 이 운영체계에 조응하여 査檢册, 都案, 納未納區別册, 井間册, 可考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던 것이다.

핵심어 : 내장원, 경리원, 역둔토,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분류체계

1. 머리말

1895년 4월 내장원은 왕실의 보물 및 世傳莊園과 기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되었다.[1] 그러나 내장원은 정치적 변동 과정을 거치면서 왕실재산의 범위를 넘어 국가재원까지도 관할하였다. 1895년 9월경 이미 둔토의 일부를 관할하였던 내장원은 대한제국기 황제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1899년 둔토, 1900년 역토 전체를 관할하였다.[2] 이에 내장원은 역둔토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광무사검을 시행하고 賭租를 징수하였다.

내장원은 역둔토를 조사하고 도조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서를 생산·유통하였다. 내장원은 광무사검을 통해 역둔토의 소재지·지목·면적·작인 등을 파악하고 해당 토지의 도조량을 결정한 査檢册을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장원은 매년 도조를 징수하면서 徵收記를 작성하였다. 징수기는 보통 郡 단위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징수실태를 道 단위로 총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都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도조가 항상 완납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도조의 징수여부를 기록하는 納未納區成册을 작성하였다. 내장원은 이렇게 작성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역둔토의 도조량과 징수 실태를 총괄적으로 정리한 井間册을 작성하였다. 내장원은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생산한 이러한 문서들을 査檢·定賭·徵收의 역둔토 운영체계에 조응해서 査檢册, 都案, 納未納區別册, 井間册 등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였다.[3]

---

1) 『韓末近代法令法令集』 I, 「布達第1號 宮內府官制」, 1895.4.2, 310면.

2) 김양식, 2000 『근대권력과 토지』, 해남, 55-64면.

그러나 1907년 11월 내장원이(폐지 당시는 경리원) 폐지되고 역둔토문서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査檢・定賭・徵收 체계에 조응한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가 붕괴되었다.[4]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개별 성책들이 아무 연계 없이 수십 건씩 함께 묶여 합철본의 형태로 편철되었다.[5]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에 소장된 합철본의 대표적인 문서철로는『經理院驛屯土成册』이 있다.『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이하『綜合目錄』)에『經理院驛屯土成册』은 16종 38책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문서철에 실제 편철된 역둔토성책은 총 328책에 이른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328책의 역둔토성책이 16종 38책에 뒤섞여 합철본의 형태로 편철되어 있는 것이다.[6]

규장각에 소장된 역둔토성책 가운데『經理院驛屯土成册』과 비슷한 형태로 편철되어 있는 다른 문서철로는『經理院可考件』이 있다.『經理院可考件』도『經理院驛屯土成册』처럼 성격이 다른 수십 건의 역둔토 성책이 함께 편철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합철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經理院可考件』은 어떤 방식으로 편철되어 있고 어떤 성격의 문서철인지『經理院驛屯土成册』과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經理院可考件』의 재분류 방향과 내장원의 역둔토문서 분류체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經理院可考件』의 편철 양상

규장각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문서철들을 함께 모아 한 질로 묶고 하나의 청구기호와 도서명을 부여해서 1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綜合目錄』에는『經理院可考件』이라는 동일한 도서명의 문서철이 6종 14책에 이른다.

---

3) 박성준, 2015『대한제국기 공문서 연구』, 아모르문디, 221-223면.

4) 위의 책, 226-227면.

5) 이상찬, 1991「『引繼에 關한 目錄』과『調査局來去文』의 검토」『書誌學報』6, 34면.

6) 박성준, 앞의 책, 228면.

〈표 1〉 규장각 소장『經理院可考件』의 현황

번호	청구기호	목록 책수	실 책수	도서명
1	奎 20247	1	9	經理院可考件
2	奎 20533	1	12	經理院可考件
3	奎 20870	1	14	經理院可考件
4	奎 21148	5	65	經理院可考件
5	奎 22052	1	18	經理院可考件
6	奎 22098	5	65	經理院可考件
계	6종	14책	183책	

〈표 1〉에서 보듯이『經理院可考件』은 도서명은 동일하지만 청구기호는 奎 20247부터 奎 22098까지 각각 다르게 부여되어 6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합철본인『經理院驛屯土成册』도 마찬가지이다.『經理院驛屯土成册』도 도서명은 동일하지만 16개의 각각 다른 청구기호가 부여되어 16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음으로『綜合目錄』에는『經理院可考件』이 14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편철되어 있는 성책은 183책에 이른다.『經理院驛屯土成册』도『綜合目錄』에는 38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편철되어 있는 성책은 328책이다.

이처럼『經理院驛屯土成册』과 편철·분류체계가 비슷한『經理院可考件』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9책이 편철되어 있는 奎 21045의『經理院驛屯土成册』과 18책이 편철되어 있는 奎 22052의『經理院可考件』을 비교해 본다.

〈표 2〉『經理院驛屯土成册』(奎 21045)과『經理院可考件』(奎 22052)의 표지 비교

도서명		『經理院驛屯土成册』			『經理院可考件』		
항목		표제	창고번호도장	분류도장	표제	창고번호도장	분류도장
표지	①	經理院驛屯土成册			經理院可考件		
	②	經理院驛屯土成册	3-158-ㅁ		經理院可考件	3-161-ㅅ	
	③				可考册		10/41/184-2-ㅅ/明治 54년

* 분류도장: 보존년수/책수/호수/기만년월

奎 21045의『經理院驛屯土成册』과 奎 22052의『經理院可考件』의 표지를 비교해 보면『經理院驛屯土成册』은 2장의 표지가 편철되어 있고,『經理院可考件』은 3장의 표지가 편철되어 있다. 표지 ①은 규장각에서 문서철을 정리하면서 편철한 것으로 표제가 기재되어 있다. 표지 ②에는 똑같은 표제가 기재되어 있으면서 창고번호도장이 찍혀있다. 창고번호도장은 조선총독부가 갑오개혁~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정리하고 창고에 보관하면서 각 문서철에 찍은 것이다.[7)]

표지 ②의 편철 주체와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經理院驛屯土成册』과『經理院可考件』을 싸고 있는 표지 ②에 창고번호도장이 날인되었으므로 적어도 창고번호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두 문서철이 지금처럼 표지 ②에 싸여 편철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經理院驛屯土成册』은 3번 창고 158번 서가에 기호 ㅁ가 부여되어 배열되었고,『經理院可考件』은 3번 창고 161번 서가에 기호 ㅅ가 부여되어 배열되었다.

표지 ③은『經理院驛屯土成册』에는 없고『經理院可考件』에만 편철되어 있다. 표지 ③에는 "可考册"이라는 표제가 기재되어 있으면서 분류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분류도장의 보존기간이 10년이고 기만년월이 明治 54년이므로 분류도장을 찍은 시기는 1912년이다.『經理院可考件』을 1912년(명치 45년)부터 1921년(명치 54년)까지 10년 동안 보존하다 폐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經理院驛屯土成册』은 〈표 3〉에서 보듯이『經理院可考件』과 달리 분류도장이 표지에 찍혀있지 않고 각 성책에 찍혀 있다.『經理院驛屯土成册』에는 총 9책이 편철되어 있는데 각 성책의 표지에 분류도장이 각각 찍혀있다. 이 역시 보존기간이 10년이고 기만년월이 명치 54년이므로 분류도장을 찍은 시기는『經理院可考件』과 같은 1912년이다. 같은 시기에 분류도장이 날인되었지만『經理院可考件』은 분류도장이 표지 ③에 찍힌 반면에『經理院驛屯土成册』은 각 성책에 찍혔다는 차이가 있다.

---

7) 창고번호와 관련해서는 박성준, 앞의 책, 184-218면 참조.

〈표 3〉『經理院驛屯土成册』(奎 21045)과『經理院可考件』(奎 22052)의 분류도장

도서명	『經理院驛屯土成册』		『經理院可考件』		
내별번호	문서명	분류도장	내별번호	문서명	분류도장
2-1-1	平安北道各郡各屯驛土及各樣調査捻案	10/41/159-1-ヰ/明治 54년	1-1-1	[水原各屯賭租報告書副本]	×
2-1-2	忠淸南道各郡辛丑條屯驛賭租及雜稅並錄都案	10/41/159-1-ノ/明治 54년	1-1-2	[楊州各屯賭租報告書]	×
⋮	⋮	⋮	⋮	⋮	
2-2-4	慶尙北道各郡屯驛土庚子賭摠成册	10/41/159-1-コ/明治 54년	1-1-18	[蔚山牧場點檢封進馬報告書]	×

조선총독부는 분류도장을 독립된 하나의 문서철에 하나씩 찍었다. 따라서『經理院驛屯土成册』의 표지에 분류도장이 찍혀있지 않고 분류도장이 각 성책에 하나씩 찍혀있다는 것은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經理院驛屯土成册』에 편철된 각 성책들은 지금처럼 합철본으로 함께 편철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독립된 문서철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經理院驛屯土成册』에 찍힌 분류도장의 책 수가 41책이므로 조선총독부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성책 41책을 모아 한 질로 분류하고, 각 성책에 호수 159-1-*을 순차적으로 부여했던 것이다.

〈표 4〉 책 수 41, 호수 159-1-*의 문서철

청구기호	내별번호	도서명	표제/내제	문서과호수	창고번호도장
奎 19185	×	忠淸南道各郡甲辰條屯驛賭租及各稅額竝錄成册	甲辰度 忠淸南道各郡甲辰條屯驛賭租及各稅額並錄成册	159-1-ヲ	3-15△-△
奎 19192	7-1	全羅北道各郡驛屯土賭稅蔘稅實數成册	全羅北道各郡辛丑條驛畓屯土堤堰畓賭稅蔘稅實數成册	159-1-ト	3-158-イ
	7-2		全羅北道各郡驛屯土堤堰畓壬寅條賭稅及蔘稅錢實數成册	159-1-カ	3-158-イ
	7-3		全羅北道各郡癸卯條驛畓屯土堤堰畓賭稅蔘稅錢實數成册	159-1-ヘ	3-158-イ
奎 19194	×	全羅北道各郡驛畓屯土堤堰畓蔘稅實數加賭成册	全羅北道各郡驛畓屯土堤堰畓蔘稅實數加賭成册	159-1-ヨ	3-158-イ

奎 19208의1	×	全羅南道各郡驛牧屯土及各樣査漏田畓庚子條定賭錢穀都摠成册	全羅南道各郡驛牧屯土及各樣査漏田畓庚子條定賭錢穀都摠成册	159-1-ロ	3-158-イ
奎 19208의2	×	全羅南道各郡屯驛土辛丑賭穀都摠成册	全羅南道各郡屯驛土辛丑賭穀都摠成册	159-1-イ	3-158-イ
奎 19219	2-1	慶尙道各郡屯驛田畓壬寅度賭穀摠數成册	慶尙北道各郡屯驛田畓壬寅度賭穀摠數成册	159-1-ニ	3-158-イ
	2-2		慶尙北道各郡屯驛田畓癸卯度賭穀摠數成册	159-1-ハ	3-158-イ
奎 19220	×	慶尙北道各郡屯驛土辛丑賭摠成册	慶尙北道各郡屯驛土辛丑賭摠成册	159-1-ホ	3-158-イ
奎 21045	2-1-1	經理院驛屯土成册	平安北道各郡各屯驛土及各樣調査捻案	159-1-キ	×
	2-1-2		忠淸南道各郡辛丑條屯驛賭租及雜稅並錄都案	159-1-ノ	×
	2-1-3		甲辰歲 平安北道各郡公土打穀稅米賭錢册	159-1-オ	×
	2-1-4		通津路南路北賭地磨鍊記	159-1-ク	×
	2-1-5		龍仁郡蒲谷面釜谷屯田畓成册	159-1-ヤ	×
	2-2-1		江華郡所在明禮宮屯田畓秋收區別成册	159-1-マ	×
	2-2-2		廣州郡所在官屯結卜區別成册	159-1-ケ	×
	2-2-3		忠淸南道各郡各屯各稅實數成册	159-1-フ	×
	2-2-4		慶尙北道各郡各屯驛牧土庚子賭摠成册	159-1-コ	×
奎 25067	×	慶尙北道各郡驛土屯土庚子賭穀屯土己亥賭穀庖肆庚子辛丑稅金殖利錢各公廨發賣錢都傯摠成册	慶尙北道各郡驛土屯土庚子賭穀屯土己亥賭穀庖肆庚子辛丑稅金殖利錢各公廨發賣錢都傯摠成册	159-1-ヌ	3-158-イ
奎 25070	×	慶尙北道各郡癸卯度蔘圃年根間數及圃主姓名成册	慶尙北道各郡癸卯度蔘圃年根間數及圃主姓名成册	159-1-リ	3-158-イ

〈표 4〉는『經理院驛屯土成册』(奎 21045)에 편철된 성책과 함께 한 질로 분류되어 호수 159-1-*이 부여되었던 성책들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 10종 21책이 확인된다.『經理院驛屯土成册』과 나머지 성책들을 비교해 보면『經理院驛屯土成册』에 편철된 성책은 분류도장만 찍혀있고 창고번호도장이 찍혀있지 않지만, 다른 성책에는 분류도장과 함께 창고번호도장도 찍혀있다.

호수 159-1-*이 부여된 41책에 분류도장이 하나씩 찍혀있는 것은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 이들 성책이 각각 독립된 하나의 성책으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조선총독부는 이들 41책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성책마다 창고번호도장을 각각 찍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經理院驛屯土成册』(奎 21045)에 편철된 9책은 다른 성책처럼 독립적으로 각각 창고에 보관된 것이 아니라 『經理院驛屯土成册』의 표지 ②에 싸여 지금의 합철본으로 편철되어 창고에 보관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經理院驛屯土成册』에 편철된 성책에는 분류도장만 찍혀 있고 창고번호도장은 합철본을 싸고 있는 표지 ②에만 찍혀 있었던 것이다.

『經理院驛屯土成册』(奎 21045)에 편철된 성책은 창고번호도장을 찍고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합철본으로 편철되었던 것이고, 이들 성책을 싸고 있는 『經理院驛屯土成册』의 표지 ②는 조선총독부가 이들 성책을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책 수 41, 호수 159-1-*이 현재의 모습으로 재분류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는 내장원이 관리한 역둔토성책을 재정리하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개별 성책 41책을 한질로 묶고 호수 159-1-*을 순차적으로 부여하였다. 이들 성책을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經理院驛屯土成册』(奎 21045)의 9책은 다른 성책과 달리 지금의 합철본으로 편철되었고, 이후 이들 문서철에 청구기호와 도서명을 부여하면서 41책이 현재와 같이 10종 21책으로 분류된 것이다.

이에 반해 『經理院可考件』(奎 22052)은 책 수 41, 호수 184-2-*가 부여된 분류도장이 성책들을 싸고 있는 표지 ③에 하나만 찍혀 있다. 이는 분류도장을 찍기 전에 『經理院可考件』은 이미 각 성책들을 함께 모아 편철한 하나의 문서철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經理院可考件』을 하나의 독립된 문서철로 보고 분류도장을 표지 ③에 하나만 찍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經理院可考件』 역시 분류도장이 각 성책마다 찍혀 있었을 것이다. 분류도장이 『經理院可考件』의 표지에 찍힌 것은 奎 22052 외에 다른 문서철도 마찬가지이다.

〈표 5〉 책수 41, 호수 184-2-*의 문서철

도서명	청구기호	내별번호	호수
經理院可考件	奎 20247	1-1	184-2-ホ
	奎 20533	1-1	184-2-ニ
	奎 20870	1-1	184-2-ロ
	奎 21148	5-1	184-2-ト
	奎 22052	1-1	184-2-ヘ
	奎 22098	5-1	184-2-ハ1
		5-4	184-2-イ1

〈표 5〉는 책 수 41, 호수 184-2-*가 부여된 문서철 가운데 현재 확인되는 6종 7책을 제시한 것이다. 호수 184-2-*가 부여된 문서철은『經理院可考件』에서만 확인되고, 이들 분류도장은 모두 표지에 찍혀 있다.『經理院可考件』의 청구기호는 분류도장을 단위로 부여되었는데, 奎 22098의『經理院可考件』만 호수 184-2-ハ1과 호수 184-2-イ1이 합철되어 청구기호가 부여되었다. 책 수가 41이므로 분류도장을 찍을 당시에는『經理院可考件』과 같은 문서철 41건을 한 질로 묶어 분류하고 호수 184-2-*를 순차적으로 부여했던 것이다.

『經理院驛屯土成册』은 조선총독부가 역둔토성책에 분류도장을 날인한 뒤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합철본으로 편철된 것임에 반해『經理院可考件』은 분류도장이 모두 표지에 찍혀 있듯이 조선총독부가 분류도장을 날인하기 전에 이미 성책들을 함께 묶어 편철한 하나의 독립적인 문서철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經理院可考件』의 성책들은 어떻게 하나의 문서철로 편철되었는지『經理院驛屯土成册』과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표 6〉 『經理院驛屯土成册』(奎 21045)의 편철 양상

내별번호	표제	지역	연도
2-1-1	×	平安道	1901
2-1-2	忠淸南道各郡辛丑條屯驛賭租及雜稅並錄都案	忠淸道	1902
2-1-3	光武八年甲辰歲 平安北道各郡公土打穀稅米賭錢册	平安道	1904
2-1-4	建陽元年五月日 通津路南路北賭地磨鍊記	京畿道 通津	1896
2-1-5	建陽元年七月日 龍仁郡蒲谷面釜谷屯田畓成册	京畿道 龍仁	1896
2-2-1	建陽元年五月日 江華郡所在明禮宮屯田畓秋收區別成册	京畿道 江華	1896
2-2-2	建陽元年八月日 廣州郡所在官屯結卜區別成册	京畿道 廣州	1896
2-2-3	光武三年十二月日 忠淸南道各郡各屯各稅實數成册	忠淸道	1899
2-2-4	光武五年六月日 慶尙北道各郡各屯驛牧土庚子賭摠成册	慶尙道	1901

奎 21045의 『經理院驛屯土成册』에 편철된 성책은 총 9책으로 v.1에 5책, v.2에 4책이 편철되어 있다. 역둔토성책의 연도는 1896년부터 1904년까지이고, 지역은 경기도, 경상도, 평안도, 충청도이다. 지역 단위는 도를 단위로 한 경우도 있었고, 군을 단위로 한 경우도 있었다. 문서의 성격은 내별번호 2-1-2처럼 역토·둔토의 도조와 雜稅의 징수 내역을 기재한 都案도 있었지만, 2-2-1처럼 궁방전의 징수내역을 기재한 성책도 있었다. 『經理院驛屯土成册』은 전혀 연계성을 갖지 않는 다양한 연도, 지역, 성격의 성책 수십 건이 함께 뒤섞인 합철본의 형태로 편철되었던 것이다.

〈표 7〉 『經理院可考件』(奎 22052)의 편철 양상

내별번호	공문서명	지역	생산연도
1-1-1	[水原各屯賭租報告書副本]	京畿道 水原	1900
1-1-2	[楊州各屯賭租報告書]	京畿道 楊州	1900
1-1-3	[延曙驛畓中移屬于仁祖大王碑閣直秩]	漢城府	1900
1-1-4	長淵郡牧場屯土各稅穀總案	黃海道 長淵	1900
1-1-5	黃海道金川郡所在親屯勳屯收租捧留實數及時直幷錄成册	黃海道 金川	1900
1-1-6	黃海道安岳郡所各屯土己亥條秋收成册	黃海道 安岳	1900
1-1-7	淸風郡各屯土賭租元加並錄成册	忠淸道 淸風	1901

1-1-8	忠淸南道天安郡所在訓鍊屯秋收穀包實數成册	忠淸道 天安	1899
1-1-9	忠淸南道天安郡所在訓鍊屯秋收穀包實數成册	忠淸道 天安	1899
1-1-10	忠淸南道天安郡各樣屯秋收穀包實數及上納都數各項應下並錄成册	忠淸道 天安	1899
1-1-11	忠淸南道天安郡各樣屯土秋收穀包實數及上納都數各項應下並錄成册	忠淸道 天安	1899
1-1-12	慶尙南道東萊府放賣五屯田畓斗數錢數査正册	慶尙道 東萊	1900
1-1-13	忠淸南道洪州郡所在各樣屯土秋收租苞都數成册	忠淸道 洪州	1900
1-1-14	平安北道楚山郡軍田沙汰殖利錢流亡成册	平安道 楚山	1899
1-1-15	慶尙南道金海郡所在宮內府所管前統營屯畓庫稅租今災成册	慶尙道 金海	1900
1-1-16	忠淸南道韓山郡己亥條各屯土收賭錢租捧留成册	忠淸道 韓山	1899
1-1-17	忠淸南道韓山郡己亥條各屯土收賭錢租捧留成册	忠淸道 韓山	1899
1-1-18	[蔚山牧場點檢封進馬報告書]	慶尙道 蔚山	1897

奎 22052의『經理院可考件』은 1책에 총 18책이 편철되어 있다. 역둔토성책의 연도는 1897년 1책, 1899년 7책, 1900년 9책, 1901년 1책이다. 지역 단위는 모두 군을 단위로 하지만 지역 범위는 경기도, 경상도, 평안도, 충청도, 황해도 등 여러 도에 걸쳐있다. 문서의 성격은 내별번호 1-1-6처럼 안악군 소재 둔토의 징수내역을 기재한 성책도 있었지만, 1-1-12처럼 방매한 역토의 斗數, 錢數를 기재한 성책도 있었다.『經理院可考件』 역시『經理院驛屯土成册』처럼 전혀 연계성을 갖지 않는 다양한 연도, 지역, 성격의 성책 수십 건이 함께 뒤섞여 편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奎 22052의『經理院可考件』에 편철된 내별번호 1-1-1의 성책에는 "四年度 庚子 各道成册可考"라고 기재된 첨지가 붙어 있다. 奎 22052의『經理院可考件』은 1900년도(광무 4년, 경자년) 각 도 성책을 모아 편철한 문서철이라는 것이다.

『經理院可考件』(奎 22052)에 편철된 성책의 연도는 1899년이 7책, 1900년이 9책으로 두 연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1899년 성책이 작성된 달을 보면 12월이 6책이었고, 10월이 1책이었다. 12월에 작성된 6책 가운데 4책의 표지에는 "光武四年一月七日到付"라고 기재되어 있고, 10월의 성책은 "光武四年一月八日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들 성책이 작성된 것은 1899년 10월과 12월이었지만, 내장

원이 받은 달은 1900년 1월이었던 것이다. 12월에 작성된 나머지 2책의 표지에는 접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奎 22052의 『經理院可考件』은 내장원이 문서를 접수했던 1900년을 기준으로 성책들을 모아 편철했던 것이다. 그래서 1899년에 작성되었던 성책의 일부도 1900년에 작성된 문서와 함께 편철되었던 것이다.[8] 이는 다른 『經理院可考件』도 마찬가지이다.

〈표 8〉『經理院可考件』(奎 20870)의 편철 양상

내별번호	표제	지역	연도
1-1-1	光武六年二月日 慶北各郡屯賭代錢庖稅錢各稅錢實捧及上納區別冊	慶尙道	1902
1-1-2	光武六年四月日 黃海道白川郡金鑛所鑿田畓字號結數斗落及田主姓名成冊	黃海道 白川	1902
1-1-3	忠淸南道恩津郡蘆草坪廛數束數成冊	忠淸道 恩津	1902
1-1-4	全羅北道各郡各公土辛丑條賭租中賑貸石數時價並錄成冊	全羅道	1902
1-1-5	黃海道長淵 光武六年八月日本郡苔灘屯民家漂頹成冊	黃海道 長淵	1902
1-1-6	全羅南道智島郡各島所在牧屯賭稅田畓結數區別成冊	全羅道 智島	1902
1-1-7	忠淸南道禮山郡驛屯勳屯砲屯官屯堤堰畓執灾成冊	忠淸道 禮山	1902
1-1-8	全羅南道智島郡各島所在牧屯賭稅田畓結數區別成冊	全羅道 智島	1902
1-1-9	光武六年一月日平山郡親勳屯田畓賭穀秋收成冊	黃海道 平山	1902
1-1-10	慈山郡豊田坊中里里田耕數及作人姓名成冊	平安道 慈山	1902
1-1-11	金川 光武六年二月日黃海道金川郡驛畓中指徵無處斗落賭數成冊	黃海道 金川	1902
1-1-12	×	平安道	1902
1-1-13	泗川郡所在統屯畓中執災稅租作者姓名成冊	慶尙道 泗川	1902
1-1-14	慶尙南道熊川郡前統水營屯畓川反覆沙斗落稅租作人姓名成冊	慶尙道 熊川	1902

8) 1897년 1책은 접수 날짜가 확인되지 않지만 지령 날짜가 1897년이었고, 1901년 1책은 접수 날짜가 "五年四月日到"였다. 두 성책은 접수 연도가 1900년이 아니었는데 함께 편철된 이유는 불분명하다.

奎 20870의『經理院可考件』에는 14책의 성책이 편철되어 있다. 지역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황해도로 다양했고, 성격도 내별번호 1-1-1은 역둔토・庖稅, 내별번호 1-1-2는 金鑛과 관련되어 서로 달랐지만 연도는 1902년으로 모두 동일했다. 그리고 奎 20870의『經理院可考件』도 내별번호 1-1-1의 성책에 "六年度 壬寅 各郡成册可考"라고 기재된 첨지가 붙어 있다. 이 역시 연도 1902년(광무 6년, 임인년)을 기준으로 성책들을 모아 편철하였던 것이다.

奎 20533의『經理院可考件』에는 12책의 성책이 편철되어 있다. 성책의 연도는 모두 1901년이었고, 내별번호 1-1-1의 성책에 "五年度 辛丑 各道成册可考"라고 기재된 첨지가 붙어 있다. 奎 20247의『經理院可考件』에는 9책의 성책이 편철되어 있다. 성책의 연도는 모두 1906년이었고 내별번호 1-1-3의 성책에 "光武十年度 丙午 各道成册可考"라고 기재된 첨지가 붙어 있다. 이들 역시 1901년(광무 5년, 신축년)과 1906년(광무 10년, 병오년)을 기준으로 성책을 편철하였던 것이다.

〈표 9〉『經理院可考件』(奎 22098, v.1~5)의 편철 양상

목록 책수	편철 책수	연도(책수)	기준 연도	분류도장
v.1~3	34	1904년(7책), 1905(27책)	1905	184-2-ハ1
v.4~5	31	1903년(31책)	1903	184-2-イ1

奎 22098의『經理院可考件』(v.1~5)에는 총 65책의 성책이 편철되어 있다. v.1~3에 편철된 성책의 연도는 1904년이 7책, 1905년이 27책이었고, v.4~5에 편철된 성책의 연도는 모두 1903년이었다.

v.1~3에 편철된 1904년도 7책의 작성 달을 보면 8월이 1책, 11월이 2책, 12월이 4책이었다. 이들 성책의 접수 날짜를 보면 8월의 성책은 1904년 12월 30일에 접수가 되었고, 11월의 2책은 1904년 12월 7일과 1905년 1월 2일에 접수되었고, 12월의 2책은 1905년 1월 2일에 접수되었다. 12월의 나머지 2책은 접수스탬프가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접수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v.1~3에 편철된 34책은 연도 1905년을 기준으로 편철되었던 것이고, v.2에 편철된 내별번호 5-2-3의 성책에 "九年度 乙巳 各道成册可考"라고 기재된 첨지가 붙어 있다. v.4~5에 편철된 31책의 연도는 모두 1903년이었고, 이 역시 v.4책에 편철된 내별번호 5-4-9의 성책에 "七年度 癸卯 各道成册可考"라고 기재된 첨지가 붙어 있다.

奎 22098의 『經理院可考件』(v.1~5)은 다른 『經理院可考件』과 달리 1903년(광무 7년, 계묘년)과 1905년(광무 9년, 을사년)을 기준으로 편철된 두 개의 문서철을 함께 합쳐서 편철했던 것이다. 그래서 奎 22098의 『經理院可考件』에는 다른 『經理院可考件』과 달리 분류도장이 두 개 찍혀 있었던 것이다.

〈표 10〉『經理院可考件』(奎 21148, v.1~5)의 편철 양상

목록 책수	편철 책수	연도(책수)	기준 연도
v.1	19	1903(1건), 1904(16건), 1905(1건), 1906(1건)	1904
v.2	4	1903(1건), 1904(3건)	
v.3	12	1903(1건), 1904(10건), 불명(1건)	
v.4	16	1903(3건), 1904(12건), 불명(1건)	
v.5	14	1903(2건), 1904(12건)	

奎 21148의 『經理院可考件』(v.1~5)에는 총 65책의 성책이 편철되어 있다. 연도는 1903년 8책, 1904년 53책, 1905년 1책, 1906년 1책, 불명 2책이다. 1903년, 1905년, 1906년 성책이 일부 편철되어 있지만, 이 역시 1904년을 기준으로 편철했던 것이다. 1903년도 성책은 8건 가운데 5건이 11월과 12월에 작성되었고, 접수 날짜는 1904년 1월 이후였다.[9] 奎 21148도 v.3에 편철된 내별번호 5-3-4의 성책에 "八年度 甲■ 各道成册可■"라고 기재된 첨지가 붙어 있다.[10] 奎 21148의 『經理院可考件』(v.1~5)에 편철된 65책은 1904년(광무 8년, 갑진년)을 기준으로 편철되었던

9) v.4에 편철된 3건의 1903년도 성책은 작성 달이 2월, 5월, 7월이었다. 이 가운데 2책은 접수 날짜가 1903년 8월 6일이었고, 1책은 접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10) ■는 문서가 일부 찢어져 글자가 탈락한 것임.

것이다.

동일한 도서명이 부여된 6종의『經理院可考件』은 모두 연도를 기준으로 역둔토 성책을 모아 편철한 하나의 독립된 문서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經理院可考件』에 편철된 성책들은 연도를 제외하면『經理院驛屯土成册』처럼 문서의 성격, 종류 등에서 아무런 연계성이 없었다. 내장원은 연계성이 없는 성책들을 연도를 기준으로 왜 따로 편철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3.『經理院可考件』의 성격과 내장원의 역둔토문서 분류체계

내장원은 역둔토를 비롯한 각종 국가 재원을 관할한 거대 재정기구로 확대되면서 중앙기구, 지방기구, 민들과 조회, 훈령, 보고, 소장 등 다양한 문서를 거래하였다. 내장원은 이들 문서를 거래하면서 接受册과 送達册을 작성하였다. 규장각에는 내장원이 작성한 접수책 가운데『報告接受册』(奎 21205),『訴狀接受』(奎 21203),『訴狀接受册』(奎 21204) 3책이 소장되어 있다.

『報告接受册』(奎 21205)은 지방에서 내장원에 올린 보고서의 접수 장부이다. 문서 접수시기는 1901년 5월부터 1902년 2월까지이다.『訴狀接受』(奎 21203),『訴狀接受册』(奎 21204)은 민들이 내장원에 제출한 소장의 접수 장부이고 시기는 1905년과 1906년이다.

『經理院可考件』에 편철된 성책은 지방기구나 내장원 소속 직원이 보고 형식으로 올린 성책이 대부분이므로『報告接受册』을 통해 편철 경위를 살펴본다.

『報告接受册』의 사례

① 十三日 捧稅官報告 一度 振威郡內需司李光陽事 可考
② 十四日 砥平郡報告 一度 書院畓賭租庚子事 可考
③ 十四日 楊根郡報 一度 本郡所在書院畓事 二十六日 遞付

위 사례는 내장원이 1901년 7월 13일과 14일에 경기도 지역에서 올린 보고서를

접수하면서 『報告接受册』에 기재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기재 양식은 1) 문서 접수 날짜(7월 13일), 2) 문서의 발신 기관과 문서 수량(捧稅官報告, 一度), 3) 문서 개요(振威郡內需司李光陽事), 4) 문서 처리 날짜와 처리 결과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11]

위에 제시한 ①~③의 경우 1), 2), 3) 항목은 기재 방식이 동일하지만 4) 항목은 차이가 있다. 7월 13일과 14일 봉세관과 지평군수에게 받은 보고서의 ①과 ②에는 "可考"라고 기재되어 있고, ③에는 "26일 遞付"라고 기재되어 있다.

『報告接受册』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③의 사례이다. 내장원은 보고서를 받으면 이에 대한 답신으로 지령을 내렸는데, ③의 "26일 遞付"는 7월 14일에 받은 보고서에 대해서 26일에 지령을 내려 보냈다는 것이다. 그런데 ①과 ②는 ③과 달리 4)의 항목에 처리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可考"라고 기재하였다. 내장원은 역둔토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지령을 내리면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책의 처리 결과 부분에 可考라 기재했던 것이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이 관리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한 『引繼에 關한 目錄』(奎 21653)에는 내장원이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생산한 査檢册, 都案, 納未納區別册, 井間册, 尺文 등의 문서들이 査檢·定賭·徵收의 운영체계에 따라 분류되어 기재되어 있다.[12] 이 『引繼에 關한 目錄』에는 『經理院驛屯土成册』과 같은 합철본의 문서명은 없지만, "可考册"이라고 제목을 부여한 문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引繼에 關한 目錄』「莊園課各樣書類雜物傳掌册」에는 "各道各年可考成册 二百二卷", "慶北各屯可考册 三十一卷", "慶南各屯可考册 二十三卷", "全北各屯可考册 十九卷", "自四年至十年各道各年可考册 七軸"이라고 기재된 문서명과 책 수가 확인된다. 이러한 "可考册"이 편철되는 과정은 다음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韓山郡守 沈健澤은 1899년 12월 한산군의 官屯, 勳屯 10石落이 被鹹全災되어 韓山郡 各樣屯土 秋收穀包 捧留成册을 수정해서 보고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장원은 公穀은 蠲減할 수 없다며 査檢한 實數대로 捧留한 뒤 다시 보고하라고 지령을

11) 접수책 분석은 박성준, 앞의 책, 40-53면 참조.

12) 박성준, 위의 책, 221-224면.

내렸다.[13] 한산군수가 보고서와 함께 올린『忠淸南道韓山郡已亥條各屯土收賭錢租捧留成册』(1899년 12월)은『經理院可考件』(奎 22052)에 편철되어 있다. 내장원은 全災를 이유로 도조를 감액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보고토록 하면서 이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책을『經理院可考件』에 따로 편철했던 것이며,『引繼에 關한 目錄』에 기재된 可考册이 이에 해당하는 문서철이었던 것이다.

내장원은 역둔토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나 이후 경과를 확인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책에 可考라고 기입하고, 해당 성책을 연도를 기준으로 可考册에 따로 모아 편철·분류했던 것이다. 그래서『經理院可考件』에 편철된 성책들은 아무런 연계성을 갖지 않고 연도만 동일했던 것이다.

앞서 살펴본 6종의『經理院可考件』에는 연도별로 첨지가 붙어 있었다. 이 가운데 1904년도 성책을 편철했던 奎 21148의『經理院可考件』(v.1~5) v.1에 편철된 내별번호 5-1-6의 성책에는 "自四年至十年各道各年可考册 七軸"이라고 기재된 첨지가 붙어 있다. 이 첨지는『引繼에 關한 目錄』에 기재된 "自四年至十年各道各年可考册 七軸"과 일치한다.『經理院可考件』은 내장원이 1900년부터 1906년까지 재검토해야 할 사안의 성책을 연도를 기준으로 7축으로 편철·분류해서 관리했던 문서철이었던 것이다.

내장원은 재검토해야 할 사안과 관련된 성책을 可考册에 따로 분류했기 때문에『經理院可考件』에 편철된 문서도 주로 도조의 未捧, 災減과 관련된 것이었다.『經理院可考件』에 편철된 183책의 표제에 근거해서 문서 성격을 구분해 보면 전답과 제언의 潰缺·覆沙·災害와 관련된 것이 35책, 未捧과 관련된 것이 27책이었다. 이외 성책의 표제는 대부분 일반 징수기와 차이가 없었지만 이들 역시 未捧이나 災減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한산군수가 올린 성책의 표제는『忠淸南道韓山郡已亥條各屯土收賭錢租捧留成册』(1899년 12월)이었다. 표제는 일반 징수기와 차이가 없지만 보고 내

13)『各道各郡訴狀』(奎 19164) 12책, 1899.12.1, 韓山郡守 → 내장원.

용은 被醎全災와 관련되었던 것이고, 『忠淸南道韓山郡己亥條各屯土收賭錢租捧留成冊』에는 관둔답 1석 2두락 내에서 5두락이, 훈둔답 16석 9두 4승락 내에서 10석 18두 9승락이 醎陳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제는 일반 징수기와 같았지만 실내용은 災減과 관련되었던 것이다.

『經理院可考件』은 독자적 성격을 갖는 성책을 아무런 연계 없이 수십 건씩 모아 편철한 합철본이 아니라 내장원이 역둔토를 운영하면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에 해당하는 성책을 각 연도를 기준으로 따로 모아 편철·분류한 문서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經理院可考件』의 편철 방식과 성격을 통해 내장원의 공문서 편철·분류체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내장원은 역둔토를 비롯한 각종 국가 재원을 관할하면서 다양한 공문서를 생산·유통하였다. 규장각에는 내장원이 거래한 상당량의 공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문서철로는 『訓令照會存案』(奎 19143, 89책), 『各府郡來牒』(奎 19146, 13책), 『內藏院經理院各道各郡報告存案』(奎 19163, 17책), 『訓令存案』(奎 19144, 14책) 등이 있다. 내장원은 이들 공문서를 편철할 때, 수신 문서와 발신 문서를 구분하여 편철하였다. 『훈령조회존안』과 『훈령존안』은 내장원이 발신한 조회·조복을 편철한 문서철이었고, 『각부군래첩』과 『내장원경리원각도각군보고존안』은 내장원이 수신한 조회·조복을 편철한 문서철이었다. 내장원은 수발신 여부를 기준으로 문서를 구분해서 편철하였던 것이다.[14]

그런데 내장원이 수신한 문서에는 보고서와 같은 문서류뿐 아니라 성책과 같은 대장류가 함께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 내장원은 기본적으로 문서류와 대장류를 분리해서 편철하였다. 1901년 1월 京畿捧稅官 李泰河는 "抵到廣州府ᄒᆞ와 更査驛土ᄒᆞ온즉 田畓에 日耕斗落과 賭租實數가 大爲爽實이옵기 到底査錄ᄒᆞ오며 各屯己庚兩年條納未納及時直을 竝修成冊報告ᄒᆞ오니 査照ᄒᆞ시믈 伏望"이라며 보고하자, 내장원은 "成冊視到向事"이라고 하였다.[15]

내장원은 경기봉세관이 올린 보고서와 성책을 함께 받았지만 『京畿道各郡報告』에는 보고서만 편철되어 있고 성책은 없다. 내장원은 문서류와 대장류를 함께 수

14) 박성준, 앞의 책, 129-155면.

15) 『京畿道各郡報告』(奎 19147) 1책, 보고, 1901.1.16, 京畿捧稅官 → 내장원.

신해도 이들을 구분해서 편철하였던 것이다. 이는 각 군에서 올라온 보고를 편철한 각군보고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내장원은 문서류와 대장류를 구분하고 문서류는 수발신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편철했고, 대장류는 査檢·定賭·徵收의 역둔토 운영체계에 따라 査檢册, 都案, 納未納區別册, 井間册 등으로 분류해서 관리하였던 것이다.

내장원이 문서류와 대장류를 분리해서 편철한 방식은 可考대상인 문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살펴본 한산군은 보고서와 성책을 함께 올렸는데 내장원은 이를 可考대상으로 분류하면서 보고서는『各道各郡訴狀』(奎 19164)에 편철하였고, 성책은『經理院可考件』에 편철하였다. 이 역시 문서류와 대장류를 구분해서 편철했던 것이다. 다만 내장원은 可考대상의 문서를 다른 문서와 구분하지 않고『各道各郡訴狀』에 함께 편철했지만, 성책은 다른 성책과 구분해서 可考册에 따로 편철하였다.

내장원은 역둔토를 운영하면서 재검토해야 할 可考 대상에 대해서는 성책을 따로 분류하고 연도를 기준으로 편철했으므로『經理院可考件』은 이에 기초해서 재분류되어야 한다.

〈표 11〉 연도를 기준으로 한『經理院可考件』의 재분류

번호	연도	청구기호	도서명	목록 책수	편철 책수
1	1900	奎 22052	經理院可考件	v.1	18
2	1901	奎 20533	經理院可考件	v.1	12
3	1902	奎 20870	經理院可考件	v.1	14
4	1903	奎 22098	經理院可考件	v.4~5	31
5	1904	奎 21148	經理院可考件	v.1~5	65
6	1905	奎 22098	經理院可考件	v.1~3	34
7	1906	奎 20247	經理院可考件	v.1	9
합계		6종		14책	183책

규장각에 소장된『經理院可考件』은 도서명은 동일하지만 청구기호는 奎 20247부터 奎 22098까지 각각 따로 부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經理院可考件』의 각 문

서철은 전혀 연계성이 없는 별개의 문서철처럼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표 9〉와 같이 연도를 기준으로 재배열하면 순차적으로 연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經理院可考件』은 내장원이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1900년부터 1906년까지 재검토해야 할 可考 대상을 따로 분류하고 연도를 기준으로 7축으로 편철해서 관리했던 문서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經理院可考件』의 성격 분석을 통해 내장원의 역둔토문서 분류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經理院可考件』의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장원의 역둔토문서 분류체계를 査檢・定賭・徵收의 역둔토 운영체계에 조응하여 査檢册, 都案, 納未納區別册, 井間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16] 그러나 지금까지 합철본으로 인식되었던 『經理院可考件』의 성격 분석을 통해 내장원은 査檢・定賭・徵收 체계에 기초하여 역둔토를 운영하면서 재검토해야 하거나 이후 경과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성책을 可考册에 따로 분류해서 관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은 査檢・定賭・徵收의 운영체계에 기초하여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역둔토문서 분류체계 역시 이에 조응하여 역둔토성책을 査檢册, 都案, 納未納區別册, 井間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재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可考册에 따로 분류해서 관리했던 것이다. 可考册은 역둔토 운영체계에 조응한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독자적인 한 범주였던 것이다.

『經理院可考件』은 재검토 대상인 성책을 연도를 기준으로 편철함에 따라 『經理院驛屯土成册』처럼 전혀 연계성이 없는 수십 건의 성책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편철된 합철본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經理院可考件』은 내장원이 재검토 대상의 성책을 可考라는 독자적인 범주로 따로 분류해서 관리했던 문서철이었던 것이다.

『經理院驛屯土成册』은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원 질서가 붕괴되면서 만들어진 합철본이었다. 따라서 『經理院驛屯土成册』에 편철되어 있는 성책들은 분리되어 査檢・定賭・徵收의 역둔토 운영체계에 조응한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에 기

16) 박성준, 앞의 책, 222-223면.

초하여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할 대상이다. 반면『經理院可考件』은 可考라는 범주에 따로 분류되어 편철된 문서철이었듯이 합철본처럼 분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관련 문서철을 함께 모아 연도순으로 재분류해야 할 대상이다.『經理院可考件』은 可考 범주에 분류된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를 구성하고 있었던 하나의 문서철이었던 것이다.

4. 맺음말

내장원은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역둔토성책을 査檢·定賭·徵收의 역둔토 운영체계에 조응해서 분류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내장원이 폐지되고 역둔토문서가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査檢·定賭·徵收의 운영체계에 조응한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가 붕괴되었다. 조선총독부는 분류체계가 붕괴된 상태의 역둔토성책을 정리하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갖는 개별 성책들을 한 질로 묶어 분류도장을 찍고 호수를 부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한 질로 분류한 이들 성책을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연계성을 갖지 않는 일부 성책들을 따로 모아 합철본의 형태로 편철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된 대표적인 합철본으로는『經理院驛屯土成册』이 있다.『經理院驛屯土成册』에는 전혀 연계성이 없는 다양한 연도, 지역, 성격의 성책 수십 건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편철되어 있고,『經理院可考件』도 편철방식이 이와 비슷해 지금까지 합철본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經理院可考件』은 조선총독부가 대한제국기 공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어들낸 합철본이 아니었고, 편철방식도『經理院驛屯土成册』과 차이가 있었다.

『經理院驛屯土成册』은 분류도장이『經理院驛屯土成册』의 표지에 찍혀있지 않고 편철된 각 성책에 찍혀있지만,『經理院可考件』은 분류도장이『經理院可考件』의 표지에 찍혀있고 각 성책에는 찍혀있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독립된 하나의 문서철에 분류도장을 하나씩 찍었듯이, 분류도장을 찍기 전에『經理院可考件』은 이미 각

성책들을 함께 모아 편철한 하나의 독립된 문서철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장원은 査檢・定賭・徵收 체계에 기초하여 역둔토를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하거나 이후 경과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성책을 연도를 기준으로 可考册에 따로 모아 편철・분류하였다. 『經理院可考件』은 내장원이 재검토 대상인 성책을 可考라는 독자적인 범주에 따로 분류해서 편철했던 문서철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經理院驛屯土成册』은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원질서가 붕괴되면서 만들어진 합철본이었다. 따라서 『經理院驛屯土成册』에 편철되어 있는 성책들은 査檢・定賭・徵收의 운영체계에 조응한 역둔토문서 분류체계의 원 질서에 기초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經理院可考件』은 可考라는 범주에 따로 분류되어 편철된 문서철이었듯이 합철본처럼 분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관련 문서철을 함께 모아 연도순으로 재분류해야 할 대상이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은 査檢・定賭・徵收의 운영체계에 기초하여 역둔토를 관할하면서 역둔토문서를 이 운영체계에 조응하여 査檢册, 都案, 納未納區別册, 井間册, 可考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던 것이다.

논문투고일(2019. 5. 9), 심사일(2019. 5. 23), 게재확정일(2019. 6. 4)

참고문헌

1. 자료

『經理院可考件』(奎 20247; 奎 20533; 奎 20870; 奎 21148; 奎 22052; 奎 22098)

2. 논저

김건우, 2008,『근대 공문서의 탄생』, 소와당.
김양식, 2000『근대권력과 토지』, 해남.
김태웅, 1994「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取調局 · 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규장각』16.
_____, 1995「일제 강점 초기의 규장각 도서 정리 사업」『규장각』18.
_____, 2008「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규장각 관리와 소장 자료 활용」『규장각』33.
박성준, 2015『대한제국기 공문서 연구』, 아모르문디.
박성진 · 이승일, 2007『조선총독부공문서』, 역사비평사.
이상찬, 1991「『引繼에 關한 目錄』과『調査局來去文』의 검토」『書誌學報』6.
_____, 1997「규장각 소장 자료의 公文書 分類圖章에 대하여」『서지학보』20.

Abstract

File keeping status of 『Gyeongriwon reference research』 owned by Kyujanggak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The document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lands by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Park sung joon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coordinated, classified and managed the system of public lands such as inspection, fixed tax and collection while governing the public lands. But after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was abolished, the original order of classification system of public lands document was collapsed, the bound volume in which individual books wi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re bound into one volume was created during this process.

『Gyeongriwon reference research』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se bound volumes up to now, 『Gyeongriwon reference research』 is not a bound volume. It is an independent document that collects, binds, classifies the matters to be reviewed again and related books while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handled with the business related to public lands.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classified and managed the document of public lands based on this operational systems such as inspection, fixed tax, collection and reference while governing the public lands during The Great Han Empire. 『Gyeongriwon reference research』 is a document file classified into reference document. Therefore, 『Gyeongriwon reference research』 is not the subject to be classified like bound volume but the subject to be re-classified in the order of year.

Key words : The Office of Crown Properties, the public lands, The Great Han Empire, The Government-General of Chosun, classification system